

의안번호	제2753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

발의자	김석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 3. 6.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

(김석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53
----------	------

발의연월일: 2024. 3. 6.

발 의 자: 김석한, 김향숙, 우정욱,
김원순, 최두임, 허옥희, 이정숙 의원(7인)

1. 제정이유

고성군 일반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군수의 책무,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13호
 - 예고기간: 2024. 3. 6.(수) ~ 3. 11.(월)[5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없음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하여 건조 또는 발효의 방법으로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로서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기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량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공동주택 또는 식품접객업 등에 대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감량기기 활용 및 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감량화를 위해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군내 소재한 단독·공동주택 등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한한다.

③ 보조금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금액의 10분의 50범위(최대 50만원)에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품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이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후관리 등) ① 제6조에 따라 감량기기를 구입·설치한 자는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화에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하고,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으로 지원한 감량기기의 적정한 사용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보조금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p>	<p>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p> <p>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가정용,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거주여부 등) 확인</p> <p>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세대주)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등</p> <p>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업무 관련(재신청 금지기간 5년)</p> <p>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주민등록 전산망 활용 관련 기관, 금융기관 등 신청 지급관련 업무 한정</p> <p>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p> <p>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및 처리</p> <p>※ 신청인은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사실 증빙자료를 신청 시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p> <p>▶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p>
---	---

□ 폐기물관리법

-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